

#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 서류 안내



아래 모든 증빙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2.06.30.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청약자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당첨 취소는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
## ■ 일반공급 구비서류

구분	해당서류	필수	해당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본인 방문 시	신분증	●		본인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(외국국적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/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)
	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 사실확인서	●		본인	발급용도 :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
	인감도장	●		본인	'본인서명사실확인서'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다. 대리인 위임 불가
	주민등록표등본	●		본인	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'전체 포함'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	●		본인	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'전체 포함'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●	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발급 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) ※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
	출입국사실증명원	●		본인	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,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청약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(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)
	주민등록표등본		●	배우자	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●	배우자	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
	복무확인서		●	본인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(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)
	무주택 소명자료		●	해당주택	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), 건축물대장등본(발급용으로 발급), 주택공시가격확인원 등
	가점산정기준표		●	본인	[건본주택 비치] 가점제 당첨자인 경우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●	직계존속	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그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		●	직계존속	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
			●	자녀	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●	본인	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
			●	자녀	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
	출입국사실증명원		●	직계존·비속	- 가점제 당첨자는 필수 제출(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) ※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• (만30세 미만)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• (만30세 이상)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직계 존·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(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)
기존1주택 처분서약 자료		●	해당주택	처분서약한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)	
서약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	●		본인	[건본주택 비치]	
대리인방문 시 추가 제출서류	위임장	●		본인	[건본주택 비치]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
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●		본인	발급기준 : 본인 발급용 / 용도 : 위임용 ※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
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●		대리인	- 대리인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외국국적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) - 서명 또는 날인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'주민등록번호',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 및 '주소변동이력'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해당사항을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

## ■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

해당서류	필수	해당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해외체류 증빙서류	●		본인	-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→ 파견 및 출장명령서(직인날인)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→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- 근로자가 아닌 경우 →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(①,②모두 반드시 제출)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
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	●	본인 및 세대원	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불인정
출입국사실증명원	●		세대원 및 미성년자녀	세대원 및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※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(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)